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2017누44239]

【전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외 2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종 외 1인)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6구합58123 판결

【변론종결】2017. 9. 15.

【주문】

]

-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1, 원고 3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3. 원고 1,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1, 원고 3이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22. 중앙2015부해1106호 피고보조참가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22. 중앙2015부해1106호 피고보조참가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22. 중앙2015부해1106호 피고보조참가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22. 중앙2015부해1106호 피고보조참가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11. 재심판정의 경위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 1) 원고 1, 원고 3의 재심 징계절차 하자 존재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 제16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각 기능별 총괄임원에게 재심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그런데 이 사건 재심에는 재심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소외 5☆☆☆☆TFT 부문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재심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이 사건 재심판 정은 위법하다.
- 2) 징계사유 부존재

가) 원고 1

- (1) 원고 1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는 참가인 회사가 제시하는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료 분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매조건에 따른 대금을 입금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재산이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참가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 (2) 원고 1의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1은 제품 판매대금 62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
- (3) 원고 1의 제3, 4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원고 1이 자료 분산이나 무상품 부당사용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

나) 원고 2

- (1) 원고 2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는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현금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렇게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 (2) 원고 2의 제2 징계사유는 원고 2가 2013. 11. 1. 거래처 루트가 변경되면서 업무상 과실로 기존 루트 거래처의 채권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일 뿐, 원고 2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려고 기도한 적이 없다.
- (3) 원고 2의 제3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그 비위행위로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

다) 원고 3

- (1) 원고 3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는 참가인 회사가 제시하는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 원고 3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참가인 회사의 재산을 유용하거나 이를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비위행위로 참가인 회사에 재산 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 (2) 원고 3의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3은 이 사건 감사를 받으면서 자료 분산 등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원고 3 가족들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원고 3이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계좌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3의 제3 징계사유로 원고 3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징계양정 부당
-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실적압박과 변칙영업행위 묵인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 참가인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도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한 원인인 점, 원고들이 변칙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도 않은 점, 원고들이 1997년 입사 이후 약 19년 동안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무겁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관계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재심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 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이다.
-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등 참조).
- 2) 갑 제15호증, 을나 제23, 37,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은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참가인 회사 사업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위원을 각 위원회 부문장(팀장)으로 구성한다(위 규정 제16조 제1항). 참가인 회사 전사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대표이사(사업부장)로, 위원을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구성하고, 사업부 인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위 규정 제16조 제2항). 재심은 원칙적으로 전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위 규정 제16조 제3항),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인 대표이사(사업부장)가 재심위원회 위원 3~5명을 위촉하고, 재심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위 규정 제10조 제2항, 제28조제2항).
- 나) 참가인 회사는 2007. 10. 1.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이하 '엘지생활건강'이라 한다)에 인수되었는데, 인수 전에는 재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다가 인수 후에 위 자격에 관한 규정이 생겼다.
 - 그러나 참가인 회사에서는 인수된 이후에도 재심위원회를 총괄임원으로만 구성한 적이 없다.
- 다) 원고 1, 원고 3은 2015. 7. 7.자 징계해고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는데, 참가인 회사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인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사업부장) 소외 1이 소외 2 상무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소외 2 상무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위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소외 3 상무, 소외 4 상무, 소외 5 부문장으로 구성되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라) 참가인 회사는 인수 이후 엘지생활건강에 소속된 임직원들 중 일부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겸임하기도 하였다.
- 당시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임원은 ○○총괄(소외 2 상무), △△총괄(소외 3 상무), □□/□□□□□□(소외 6 상무), ◇◇총괄(소외 7 상무)인데, 위 총괄임원들 중 ○○총괄, △△총괄은 참가인 회사 소속이고, 나머지 총괄임원은 엘지생활건강에 소속된 임원이다.
-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는 전사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야 하고 전사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서 위원장(대표이사)이 위촉하는 3~5인으로 구성되어야한다.
- 그러나 재직하는 기능별 총괄임원의 수가 3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원회 구성을 기능별 총괄임원으로만 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 현실적으로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심절차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재심을 신청한 징계대상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위 재심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은 참가인 회사가 엘지생활건강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의 총괄임원 조직체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엘지생활건강에서 적용되던 징계규정을 그대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위 증인의 증언), 그 밖에 참가인 인사위원회 규정의 문언과 체계를 고려한 규정 간의 조화로운 해석 등을 고려할 때, 재심위원회는 가급적 총괄임원으로 구성하되, 기능별 총괄임원의 수가 3인 미만이어서 총괄임원만으로 전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2호, 제28조 제2호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전사 인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이 옳다.
- 이 사건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참가인 회사에는 기능별 총괄임원이 소외 2, 소외 3뿐이었는데 소외 2가 대표이사 (사업부장)의 위임을 받아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외 3이 위원으로 각 참여하였고, 기능별 총괄임원 이외에 전사 인사위원회 위원이 된 소외 5 부문장은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원장 소외 2 상무로부터 적법하게 위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 5 부문장이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 1, 원고 3은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겸임하였던 엘지생활건강 소속 임원 중에 □□/□□□□□□소외 6 상무,
◇◇총괄소외 7 상무가 기능별 총괄임원으로서 이 사건 재심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었어야 함에도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닌 소외 5 부문장을 재심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엘지생활건강에 인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와 엘지생활건강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 등 취업규칙은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도 참가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옳으며, 비록 엘지생활건강 소속 임직원이 참가 인 회사의 업무를 일부 겸임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1) 인정사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 참가인 회사는 영업업무와 관련하여 '배송·수금담당은 거래처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을 수금할 때 개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다', '배송·수금담당은 거래처로부터 직접 제품 판매대금을 수금한 경우 당일 정산하여 참가인 회사금고에 입금한다.

당일 불가피하게 참가인 회사에 입금할 수 없는 경우 무통장 송금을 이용하여 입금하거나 익일 출근과 동시에 참가인 회사 금고에 입금한다', '영업담당은 고의적인 자료 분산을 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자료분산 등의 불법·부당한 영업행위에 동조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업무기준을 확립하고 있다.

- 나) 원고 1은 2013년 1월 무렵부터 2013년 11월 무렵까지 4개 업체로부터 76회에 걸쳐 판매대금 130,448,380원을 참 가인의 계좌가 아닌 원고 1 개인명의 계좌로 수취하고, 2013년 2월 무렵부터 2013년 4월 무렵까지 개인계좌로 수취한 판매대금 중 약 629,600원을 4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하여 임의 사용하였으며, 2013년 1월 무렵부터 2013년 11월 무렵까지 거래처로 등록되지 않아 제품을 납품할 수 없는 소외 9에게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타거래처가 제품을 수주한 것으로 주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5년 4월 무렵 전산상에 기재된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합계 92,258,735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자료분산을 주도하였다.
- 또한 2014. 1. 22. 참가인 회사로부터 특정 거래처에게 지급할 용도로 수령한 593,100원 상당의 무상 상품을 참가인의 허락 없이 다른 업체에게 임의로 제공하였다.
- 다) 원고 2는 2013년 1월 무렵부터 2013년 11월 무렵까지 사이에 제품 판매대금 142,948,480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수취하고, 2013년 11월 무렵 제품 판매대금 14,349,993원을 보유하면서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으며, 원고 1이 2013년 1월 무렵부터 2013년 11월 무렵까지와 2015년 4월 무렵 합계 92,258,735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한 자료분산에 동조하여 서류상 주문지가 아닌 타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하였다.
- 라) 원고 3은 2013년 1월 무렵부터 2014년 12월 무렵까지와 2015년 4월 무렵 25회에 걸쳐 합계 26,810,788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자료 분산을 주도하였다.
- 또한 위 자료 분산을 통한 허위실적으로 인하여 도매상 2곳에 대하여 1,176,154원 상당의 장려금이 잘못 지급되게 하고 , 채널 간 단가 차이로 도매상에게 부당이익이 발생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내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의 수금일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참가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유】

- 】1. 재심판정의 경위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 1) 원고 1, 원고 3의 재심 징계절차 하자 존재
-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 제16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각 기능별 총괄임원에게 재심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재심에는 재심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소외 5☆☆☆☆TFT 부문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이 사건 재심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이 사건 재심판 정은 위법하다.

2) 징계사유 부존재

가) 원고 1

- (1) 원고 1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는 참가인 회사가 제시하는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료 분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매조건에 따른 대금을 입금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재산이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참가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 (2) 원고 1의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1은 제품 판매대금 62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
- (3) 원고 1의 제3, 4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원고 1이 자료 분산이나 무상품 부당사용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

나) 원고 2

- (1) 원고 2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는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현금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전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렇게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 (2) 원고 2의 제2 징계사유는 원고 2가 2013. 11. 1. 거래처 루트가 변경되면서 업무상 과실로 기존 루트 거래처의 채권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일 뿐, 원고 2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유용하거나 유용하려고 기도한 적이 없다.
- (3) 원고 2의 제3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그 비위행위로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

다) 원고 3

- (1) 원고 3의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는 참가인 회사가 제시하는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 원고 3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참가인 회사의 재산을 유용하거나 이를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비위행위로 참가인 회사에 재산 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 (2) 원고 3의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3은 이 사건 감사를 받으면서 자료 분산 등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원고 3 가족들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원고 3이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계좌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3의 제3 징계사유로 원고 3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징계양정 부당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실적압박과 변칙영업행위 묵인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 참가인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도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한 원인인 점, 원고들이 변칙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도 않은 점, 원고들이 1997년 입사 이후 약 19년 동안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무겁다.
 -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관계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재심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 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이다.
-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등 참조).
- 2) 갑 제15호증, 을나 제23, 37,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은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참가인 회사 사업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위원을 각 위원회 부문장(팀장)으로 구성한다(위 규정 제16조 제1항). 참가인 회사 전사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대표이사(사업부장)로, 위원을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구성하고, 사업부 인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위 규정 제16조 제2항). 재심은 원칙적으로 전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위 규정 제16조 제3항),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인 대표이사(사업부장)가 재심위원회 위원 3~5명을 위촉하고, 재심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위 규정 제10조 제2항, 제28조제2항).
- 나) 참가인 회사는 2007. 10. 1.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이하 '엘지생활건강'이라 한다)에 인수되었는데, 인수 전에는 재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다가 인수 후에 위 자격에 관한 규정이 생겼다.
 - 그러나 참가인 회사에서는 인수된 이후에도 재심위원회를 총괄임원으로만 구성한 적이 없다.
- 다) 원고 1, 원고 3은 2015. 7. 7.자 징계해고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는데, 참가인 회사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인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사업부장) 소외 1이 소외 2 상무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소외 2 상무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위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소외 3 상무, 소외 4 상무, 소외 5 부문장으로 구성되었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라) 참가인 회사는 인수 이후 엘지생활건강에 소속된 임직원들 중 일부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겸임하기도 하였다.
- 당시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임원은 ○○총괄(소외 2 상무), △△총괄(소외 3 상무), □□/□□□□□□(소외 6 상무), ◇◇총괄(소외 7 상무)인데, 위 총괄임원들 중 ○○총괄, △△총괄은 참가인 회사 소속이고, 나머지 총괄임원은 엘지생활건강에 소속된 임원이다.
-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는 전사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야 하고 전사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서 위원장(대표이사)이 위촉하는 3~5인으로 구성되어야한다.
- 그러나 재직하는 기능별 총괄임원의 수가 3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원회 구성을 기능별 총괄임원으로만 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 현실적으로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심절차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재심을 신청한 징계대상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위 재심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은 참가인 회사가 엘지생활건강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의 총괄임원 조직체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엘지생활건강에서 적용되던 징계규정을 그대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위 증인의 증언), 그 밖에 참가인 인사위원회 규정의 문언과 체계를 고려한 규정 간의 조화로운 해석 등을 고려할 때, 재심위원회는 가급적 총괄임원으로 구성하되, 기능별 총괄임원의 수가 3인 미만이어서 총괄임원만으로 전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2호, 제28조 제2호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전사 인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이 옳다.
- 이 사건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참가인 회사에는 기능별 총괄임원이 소외 2, 소외 3뿐이었는데 소외 2가 대표이사 (사업부장)의 위임을 받아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외 3이 위원으로 각 참여하였고, 기능별 총괄임원 이외에 전사 인사위원회 위원이 된 소외 5 부문장은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원장 소외 2 상무로부터 적법하게 위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 5 부문장이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 1, 원고 3은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겸임하였던 엘지생활건강 소속 임원 중에 □□/□□□□□□소외 6 상무, ◇◇총괄소외 7 상무가 기능별 총괄임원으로서 이 사건 재심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었어야 함에도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닌 소외 5 부문장을 재심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엘지생활건강에 인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와 엘지생활건강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 등 취업규칙은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도 참가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옳으며, 비록 엘지생활건강 소속 임직원이 참가 인 회사의 업무를 일부 겸임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참가인 회사는 영업업무와 관련하여 '배송·수금담당은 거래처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을 수금할 때 개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다', '배송·수금담당은 거래처로부터 직접 제품 판매대금을 수금한 경우 당일 정산하여 참가인 회사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금고에 입금한다.

당일 불가피하게 참가인 회사에 입금할 수 없는 경우 무통장 송금을 이용하여 입금하거나 익일 출근과 동시에 참가인 회사 금고에 입금한다', '영업담당은 고의적인 자료 분산을 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자료분산 등의 불법・부당한 영업행위에 동조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업무기준을 확립하고 있다.

- 나) 원고 1은 2013년 1월 무렵부터 2013년 11월 무렵까지 4개 업체로부터 76회에 걸쳐 판매대금 130,448,380원을 참 가인의 계좌가 아닌 원고 1 개인명의 계좌로 수취하고, 2013년 2월 무렵부터 2013년 4월 무렵까지 개인계좌로 수취한 판매대금 중 약 629,600원을 4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하여 임의 사용하였으며, 2013년 1월 무렵부터 2013년 11월 무렵까지 거래처로 등록되지 않아 제품을 납품할 수 없는 소외 9에게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타거래처가 제품을 수주한 것으로 주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5년 4월 무렵 전산상에 기재된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합계 92,258,735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자료분산을 주도하였다.
- 또한 2014. 1. 22. 참가인 회사로부터 특정 거래처에게 지급할 용도로 수령한 593,100원 상당의 무상 상품을 참가인의 허락 없이 다른 업체에게 임의로 제공하였다.
- 다) 원고 2는 2013년 1월 무렵부터 2013년 11월 무렵까지 사이에 제품 판매대금 142,948,480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수취하고, 2013년 11월 무렵 제품 판매대금 14,349,993원을 보유하면서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으며, 원고 1이 2013년 1월 무렵부터 2013년 11월 무렵까지와 2015년 4월 무렵 합계 92,258,735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한 자료분산에 동조하여 서류상 주문지가 아닌 타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하였다.
- 라) 원고 3은 2013년 1월 무렵부터 2014년 12월 무렵까지와 2015년 4월 무렵 25회에 걸쳐 합계 26,810,788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자료 분산을 주도하였다.
- 또한 위 자료 분산을 통한 허위실적으로 인하여 도매상 2곳에 대하여 1,176,154원 상당의 장려금이 잘못 지급되게 하고, 채널 간 단가 차이로 도매상에게 부당이익이 발생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내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의 수금일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참가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